

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김원중 · 유정희 부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규남 의원
입니다.

□ 문화재 보존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
문화재와 시민 삶이 공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‘서울
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
드리겠습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는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체
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
제정되었습니다.

□ 특히 제19조는 상위법인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국가 및
서울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설정과 건
설공사 시행의 인가·허가 등에 관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
습니다.

- 그런데, 동조 제5항의 경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한 바깥 지역까지 양각규제, 지하 50m 굴착 제한 등을 적용·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해당 조항과 같이 주거환경, 정주 여건 등과 밀접히 관련된 건설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, 문화재와 서울시민의 상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 정책을 실현하는 한편 서울시민의 정주권과 재산권들을 보호해 지속 가능한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불분명하고 과도한 해당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